

[별표 2]

교육운영 기준(제9조 관련)

구 분	기 준
교육시간	가. 인명구조사 2급 : 135시간 이상 나. 인명구조사 1급 : 135시간 이상 다. 전문인명구조사 : 180시간 이상 다만, 교육은 기회의 확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 1개 해당분야는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, 해당분야의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.
교과목 편성기준	가. 인명구조사 2급 - 구조활동의 일반원칙, 구조장비 사용,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- 산악·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·등반·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- 수상(내수면·해수면을 포함한다)에서의 구조 및 수중(내수면·해수면을 포함한다)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- 심폐소생술, 외상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나. 인명구조사 1급 - 도시인명탐색(USAR)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- 방사능 누출, 생화학테러, 위험물,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-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다. 전문인명구조사 -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-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-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-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